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
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6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행정기본법 개정(만 나이 통일)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54호로 2023년 5월 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나이 관련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(안 제1조~제6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행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: 생략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6개의 조례에서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,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- 법률 제19148호 「행정기본법」(2022.12.27. 일부개정)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 없이 법적으로는 「민법」에 따른 나이인 ‘만 나이’를,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이른바 ‘세는 나이’를, 「병역법」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‘연 나이’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등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복지·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과 분쟁이 지속되었음.
- 이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·사회적 기준의 통일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 확립을 통해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·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2023.6.28. 시행을 앞두고 있음.

6. 개별 조례별 개정 내용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통합돌봄 대상자”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가. <u>만 65세</u>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.·다. (생 략) 3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. 가. <u>65세</u> ----- ----- ----- 나.·다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<u>만 70세</u> 이상의 어르신으로,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70세</u> ----- ----- -----.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 최저 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</p> <p>1. <u>만 65세</u> 이상 노인세대</p> <p>2. ~ 5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<u>65세</u>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「주민등록법」상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<u>만95세</u> 이상인 장수노인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</p> <p>----- <u>95세</u> 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노인”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 2.·3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----- 65세 ----- -----. 2.·3. (현행과 같음)

○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효행장려금의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(이하 “부양대상자”라 한다)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만원 이내의 효행장려금(이하 “장려금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 ② ~ ⑥ (생략)	제7조(효행장려금의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100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○ 검토결과

- 「행정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행정기본법

제7조의2(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)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2. 12. 27.] [시행일: 2023. 6. 28.] 제7조의2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3. 6. 2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
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71호로 2023년 5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영등포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, 이용대상, 운영 시간, 이용료(안 제1조~제7조)

나. 행위의 제한 및 이용자의 의무(안 제8조~제10조)

다. 안전관리(안 제11조)

라.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(안 제12조~제14조)

마. 재정지원 및 지도·점검, 위탁 해지(안 제15조~제1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2023년도 예산 편성, 서울시 운영예산 보조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3) 인권영향평가: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3. 4. 27. ~ 5. 17.)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제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이고 17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·신체놀이 공간· 놀이기구 및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공공형 실내 놀이터(이하 “놀이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

마련하였고,

- 안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맞벌이가정 등 평일에 놀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용자 또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및 어린이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여 개관 및 휴관일을 정하였고,
-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놀이터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이용 및 입장의 제한, 행위의 제한, 이용자의 의무,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,
- 안 제12조에서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3조에서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선정기준, 수탁자의 의무, 재정지원, 지도·점검, 위탁의 해지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안건은 무더위·한파, 호우·대설, 미세먼지 등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아동의 놀이문화를 증진시키고,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‘놀이돌봄서비스’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

- 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)**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,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
-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④ 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
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,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